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II 가입증서

증서번호 : 2025-570960-000

■ 계약사항

계약자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자번호	458-80-01006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덕로 99 (안덕동) 흥국생명 6층		
공제기간	2025-07-05 ~ 2026-07-05		
종사자 인원	38 명	피공제자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소급일자	2025-07-05		
특이사항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00 ~ 공제기간 말일 00:00입니다.

■ 가입담보 / 금액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공제기간	공제료 (원)
		1사고당	연간 총 보상한도	자부담		
1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인)	50,000	50,000	100	2025.07.05~2026.07.05	827,300
2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5,000	10,000	100	2025.07.05~2026.07.05	
3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인)	150,000	150,000	0	2025.07.05~2026.07.05	
4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물)	5,000	10,000	0	2025.07.05~2026.07.05	

※ 돌봄업무 :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 사업

■ 적용약관

적용약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II 약관
추가 기재사항	<p>□ 우리 공제계약은 청약 당시의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 공제료를 부과하며, 공제기간 중 추가 입사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공제료 추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 (또한 퇴사에 따른 참금도 없습니다)</p> <p>□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 구역 : 대한민국(국내)</p> <p>□ 모고연장기간 적용 : 60일</p> <p>□ 피공제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p> <p>□ 피공제자의 진족에 입한 손해 부담보</p> <p>□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p> <p>□ 가입담보외 적용 특약 : 날짜인식오류 무보장 특별약관, 식면 무보장 특별약관 전쟁 및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제재위반 무보장 특별약관 사이버 사건 보장제와 특별약관, 전염병 무담보 특별약관</p>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공제료

공제료	827,300 원	납입구분	일시납
-----	-----------	------	-----

*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25. 07. 0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 용 하



보험증권(계약자용)

KB 홀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4.04)(24464)



계약 내용

계약자 증권번호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2024-3365451	보험료	
계약형태	15년납 15년만기 비즈케어 실손보상형	1회보험료	242,747원
보험기간	2024-05-30~2039-05-30	보장보험료	242,747원
납입형태	월납 자동이체	적립보험료	0원
만기수익자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보험료할인	소화설비할인
예상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액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미가입		
계약자주소	(사업장)(5136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 *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단순 확인사항이며, 담보 및 가입 금액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내용 및 담보별 상세내용은 청약서 및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보험증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 의거하여 “KB손해보험”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재물보험 가입내용 : 목적물명_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소유자	(5136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6층 (양덕동, 한국생명) 소유자 : 창원노인주간보호센터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급수 건물구조	건물급수 : 1급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콘크리트 면적 : 439.67㎡
업종	실제업종 : 0401 노인요양병원/시설 요율업종 : 0401 노인요양병원/시설
수용장소(기타상세)	소재지 내 6층 전체 수용함. 인지등급 특례적용. 음식물배상 입소자에 한함.
재물부담보	부담보없음
다중이용업일련번호	없음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건물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2억7천만원	15년/15년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집기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15년/15년

KB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KB마크

대표이사
사 장대표이사
사 장 구본욱고객콜센터
(상담 및 문의)

1544-0114

홈페이지

www.kbinsure.co.kr
m.kbinsure.co.kr

영업담당자

부산GA2-2지점 | ☎010-4503-3662
리정(김남철) | ☎010-4503-3662

발급일시

2025-09-19
16:23:51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시설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심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15년/15년
	화재배상책임Ⅱ(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계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대인 1억5천만원 (대인 : 1사고당무한) 대물 10억원	15년/15년
재물기타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1인당 8천만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1사고당 대물3억원	15년/15년
	음식물배상책임Ⅲ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단,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6.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15년/15년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행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사고당 1억원	15년/15년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15년/15년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15년/15년

담보별 상세 내용

KB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KB마크

대표이사
사 장대표이사
사 장 구본욱

담보별 상세 내용

[가스사고배상책임] LPG(액화석유가스) 1인당 8천만원 1사고당 대물 3억원 / 방호벽:있음 / 일반공장 / 용량:1.00톤/천㎡
 [음식물배상책임Ⅲ] 매출:30천만원 / 음식물배상책임_자기부담금:5만원 / 음식물배상책임중:음식점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업종코드:주.야간보호시설 /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_자기부담금:50만원 /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_요양시설전문인수:11 /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유형코드:1사고당 1억원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유형코드:1인당 1천만원,1사고당 1억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업종코드:주.야간보호시설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수용인원수:44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자기부담금:100만원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수용인원수:44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자기부담금:100만원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유형코드:1인당 3천만원,1사고당 3억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업종코드:주.야간보호시설

피보험자

예약담보 년/월지급형담보 면책기간有

피보험자	최미숙(650210-2*****) 59세 여 1급 보건의료관련 사무직 관리자(원무과 제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계약자와의 관계	임직원	사망외수익자	최미숙(650210-2*****)
피보험자주소	(자택)(515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 * ** *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1 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한도	2천만원	15년	15년 2024-05-30~ 2039-05-30

보험료 할인 상세

할인명	적용대상	할인내용
소화설비할인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임차자배상책임(화재)(실손보상, 비례보상) ※ 소화설비할인은 일반, 공장 물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① 소화기 : 3% 할인 ② 소화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11% 할인 ※선택한 할인유형(① or ②)에 따라 위 할인대상담보의 위험보험료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동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탑승 포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KB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KB마크

대표이사
사 장대표이사
사 장 구본욱

구분	내용
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p>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p> <p>①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p> <p>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p> <p>-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p>
화재보험관련 사항	<p>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p> <p>간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및 차에 심는 비용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p> <p>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간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 책임 II 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p>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 II 단독 가입시 유의 사항 : '화재배상책임 II 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p>
예상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p>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4-05-30 현재 연 "1.6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p>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p> <p>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p> <p>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p> <p>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p> <p>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 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하여 계약내용 변경일 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 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p>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p>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관련 서면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로 확인전화를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p>

구분	내용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p>■ 1종: 해당사항 없음</p> <p>■ 2종</p> <p>가) 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p> <p>1)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해당담보 갱신주기(3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p> <p>2) 갱신시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 이까지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p> <p>3) 갱신시 보험료 통보</p> <p>-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p> <p>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p> <p>-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은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갱신주기(3년)동안 적용합니다.</p> <p>다)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p> <p>-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p> <p>라) 보험료 납입방법</p> <p>- 【갱신계약】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p>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p>1) 적용대상 : 이 보험계약의 만기 시점에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4)에서 정한 만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까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p> <p>2) 지급방식 : 3)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4)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1)에서 정한 지급대상 계약의 만기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p> <p>3) 만기유지보너스 금액 : (월납 보장보험료 X 4% + 월납 적립보험료 X 1%) X 12 X 납입기간</p> <p>다만, 영업보험료 합계액은 보험료 할인여부와는 관계없이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p> <p>4)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기간이 끝나는날(계약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p> <p>※ 단, 【갱신계약】 특별약관은 만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p> <p>5)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p>
자필서명	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을 음성녹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p>※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p> <p>※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p> <p>※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시	고객님의 원활한 계약관리와 보상을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발행사항	본 보험증권은 2025년09월19일 부산GA2-2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행 당시 상태는 (정상) 입니다. (290231020250919162351)
모집지점	모집지점 : 부산GA2-2지점(☎051-667-2390) 영업담당자 : (주)엠금융서비스 케어아이에프에이부산센터보험대리점(김남철)(☎010-4503-3662) RQ25-62875455 고유번호 : 20210920003040

* KB손해보험 대표앱으로 보험금 청구를 쉽고 간편하게!



먼저 KB손해보험 앱에 접속해 주세요.



앱 화면 하단에서 '보험금 청구'를 누르고



'내용 입력'후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꿀! 알려드릴게요.

※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KB손해보험 대표앱]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KB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KB마크



대표이사
사 장

대표이사
사 장

구 본 목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모바일 약관	
--------	---	------	---	--------	---